

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
2020 년도 투명성 보고서

2021. 1. 26

주식회사 콘버스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
제 64 조의 5(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)에 따라 정보통신
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
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21년 1월 26일

1. 일반현황 ('20 년 12 월말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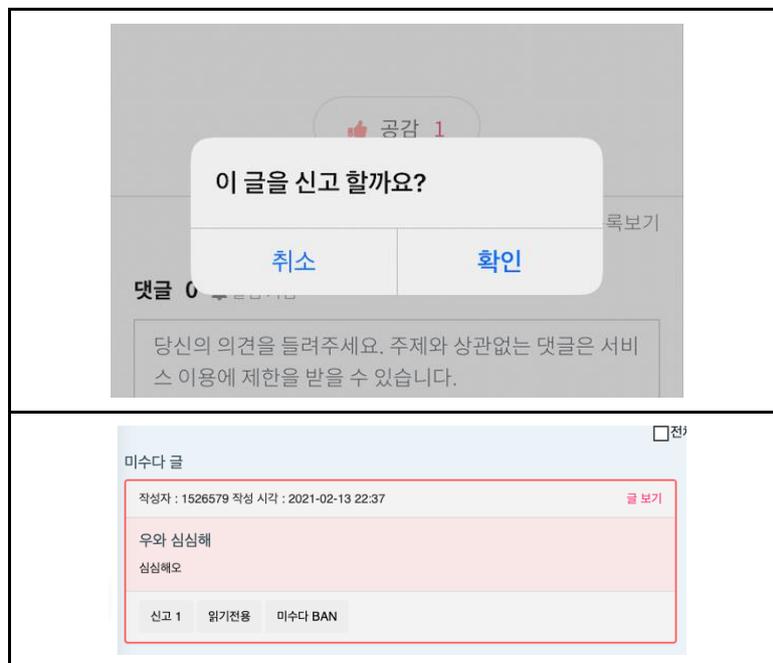
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	주식회사 콘버스
대표자	유신상, 서우람
정보통신 주요서비스 / 3 개월 일일평균이용자	인공지능 애나 / 일평균 5,900 명
정보통신서비스부문 연평균 매출액	약 11 억원
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	개발팀 이사 박지훈

2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

a. 사용자 문의 및 신고 대응을 위한 CS 팀 운영

- 관리자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모니터링
- 사용자 문의 대응 및 신고 확인 처리

b. 신고 시스템 운영, 모든 신고 건에 대해 CS 담당자가 직접 확인



c. 불법 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절차 마련하여 CS 가이드에 명시

9. 불법촬영물 관련
 사용자 신고나 메일 및 콘텐츠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촬영물 관련 콘텐츠 적발시 처리 절차
 (1)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에게 즉각 상황 보고
 (2) 게시물 삭제 처리 및 필요시 콘텐츠 게시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제한 처리
 (3) 내부적인 판단이 어려울 시 게시물 가림 처리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 요청
 (4)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안내

3.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

'20 년 월별 불법촬영물등 신고·삭제요청 현황 및 처리

대상기간 : '20.12.10. ~ 12.31.(신고접수 기준)

구분	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계	
신고 접수	신고 ·삭제 요청인	피해자 등										0	0	0	0	
		기관·단체											0	0	0	0
		소계											0	0	0	0
	사유	불법촬영물														
		허위영상물 등														
		아동청소년성착취물														
처리 결과	자체 삭제·접속차단															
	해당없음															
	방심위 심의요청	심의삭제·차단														
		해당없음														
		각하 등														
	소계												0	0	0	0
	삭제·차단 사유	불법촬영물														
		허위영상물 등														
		아동청소년성착취물														

4.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

a. 절차

- 사용자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신고 또는 삭제 요청이 있을 시 유통 방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법 촬영물 등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콘텐츠 삭제, 게시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제한 처리를 한다.
- 자체적인 확인,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.
- 신고자에게 해당 불법 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결과를 회신한다.

b. 기타 운영관련 사항

- 유통 방지 책임자는 시스템 점검과 관련 인원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.
- 불법 촬영물 등 유통 신고서 및 해당 결과에 관련된 문서를 3년 이상 보관한다.

5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

	정	부
성명	박지훈	서기선
부서	개발팀	CS 팀
직책	사내이사	CS 팀장
지정일	2020년 12월 15일	2020년 12월 15일

6.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

구분	교육일	교육명	참석자	시간	교육기관
교육 실시	2020. 12. 17	불법촬영물 제도 및 처리절차	CS 팀	1시간	자체교육